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의 인권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이무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본 연구는 우선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한 인권과 관련한 외교적 대응의 특징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와 북한 당국의 대응 논리 사이의 주된 쟁점을 분석하고, 현재 북한 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논리가 중국의 논리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의 인권에 대한 시각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한다.

약소국인 북한은 인권보다는 국가주권을 강조하면서 ‘서방식’과 ‘우리식’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통한 배제의 논리를 더욱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국가 주권과 내정불간섭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식 인권론의 논리에 따르면, 결국 국권을 수호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수령과 당의 지도를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인권관과 이에 입각한 외교적 대응을 볼 때,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인권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모든 대화와 협력이 그러하듯이 인권대화의 전제는 바로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한 상호신뢰의 형성이라는 점이다.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실태와 북한의 인권관, 인권과 관련한 외교적 대응의 ‘다름’을 단순히 비판하기 보다는 ‘다름’의 대한 비판적 이해를 통해 ‘공통분모’를 만들어 나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1. 서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 개선을 권고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소위 ‘우리식 인권론’을 주장하면서 이에 맞서고 있다. 사실 ‘북한 인권문제’¹⁾는 보편적 인권을 북한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어떠한 인권관에 기초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정책을 북한 당국의 인권관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우선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한 인권과 관련한 외교적 대응의 특징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와 북한 당국의 대응 논리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8-005-J01501).

1)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인권을 둘러싼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이론적 측면에서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실천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인권의 보편성을 북한이라는 대상에 적용하는 방식과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의 인권 현황, 개선방향,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포괄하는 난해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서보혁, 『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7), 10쪽.

사이의 주된 쟁점을 분석하고, 현재 북한 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논리가 중국의 논리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의 인권에 대한 시각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북한의 『로동신문』을 비롯한 정기간행물과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인권관련 보고서(특히 지난 2009년 11~12월에 있었던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회의에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북한 당국의 인권관을 분석한다.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인권 보고서는 북한의 시각과 정책,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인권과 관련된 이론적, 실천적 논쟁을 포함하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정책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향후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및 동북아 차원의 협력 방안 모색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2. 북한의 ‘우리식 인권론’

북한 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식 인권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물론 연구자의 시각과 입장에 따라 우리식 인권론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다르지만 그 특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사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²⁾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북한 당국이 제시하는

2) 김수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서울: 통일연구원, 2007); 김수암,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인권관,” 『북한법연구』, 제11호(2008), 37~62쪽; 이원웅, “국제사회의 인권 압력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비판적

‘우리식 인권론’의 특성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그 특성을 간단히 살펴본다.

북한 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식 인권론’은 첫째, 주체사상과 결합되어 형성된 인권관으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집단주의, 계급성, 그리고 사회권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나 인권에 대한 상대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셋째,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인권을 국가주권과 결부시켜 파악하고 있다.

1) 사회주의 인권관과 주체사상의 결합

우선 인권에 대한 북한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주체사상의 확립 전후를 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57년에 발행된 『대중정치용어사전』을 보면,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1970년에 발행된 『정치용어사전』에서는 사회주의 일반과 마찬가지로 사회권과 함께 발전권의 강조, 그리고 계급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³⁾

평가,” 『국제정치논총』, 제47집 1호(2007); 위의 책; 정태욱,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9) 등을 참조. 특히 본 논문은 이들 논의 가운데 김수암의 연구를 주로 참조하여 북한 인권론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 3) 1957년에 발행된 『대중정치용어사전』은 인권을 “정치, 경제, 문화 등등 온갖 사회활동 분야에 있어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유, 평등의 권리”로 정의하면서 인권의 계급성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대중정치용어사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213쪽. 그런데 1970년에 발행된 『정치용어사전』에서는 인권의 계급적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전은 인권을 “인민이 웅당 가져야 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 권리”라고 정의하면서, 인권은 “튼튼한 물질적 조건에 의해 담보”되며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사회권과 발전권, 그리고 계급적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718쪽.

그런데 1980년대 들어 주체사상의 확립과 함께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자주적 권리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주체사상이 체계화된 이후 발행된 『조선말대사전 2』은 인권을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곧 사람의 자주적 권리”,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인권은 그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등 사회생활에서 표현”된다고 정의하고 있다.⁴⁾ 주체사상에 말하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사람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권리로 인권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적 인권의 성격에 주체사상이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 말하는 사람, 사회적 존재, 인민대중이라는 용어 자체가 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다. 집단주의 원칙에 입각한 인권 인식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집단주의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 개념을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사회를 전체 인민의 공통된 목적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함께 투쟁해 나가는 집단주의 사회로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집단주의를 떠난 개인의 요구는 개인주의적 탐욕으로 전환하게 되어 집단의 다른 성원들의 자주적 요구를 침해하고, 집단의 단합과 협력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다운 인간생활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에서만 훌륭히 실현”된다고 강조하고 있다.⁵⁾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개념은 계급적 성격을 숨기지 않는다. 북한은 ‘인민대중’과 인민대중의 인권을 침해하는 ‘계급원수’로 구별하여

4) 『조선말대사전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696쪽.

5)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선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457~458, 471쪽.

후자의 자유와 권리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나아가 반혁명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면 인민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제도 자체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문제에서도 계급성을 숨기지 않는다. 사회주의 인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 인권이 아니다. 인민대중의 인권을 침해하는 소수의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우리의 인권이다. 반동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인권의 원수들의 책동으로부터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정정당당한 주권행사이다.”⁶⁾

이와 함께 북한은 사회권을 중심으로 인권을 이해하고 있다.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국가가 의식주, 보건, 교육 등 인민생활의 기본적 필요를 제공하는 것에 1차적 관심을 두고 있는 체제 특성 때문이다. 북한은 이를 인민적 권리와 자유의 실질적 보장, 물질적 조건 충족을 통한 인민의 행복추구로 설명하고 있다.⁷⁾

사회주의 인권 개념과 주체사상이 결합된 북한의 인권 개념은 1990년대 들어 ‘우리식 인권’ 개념으로 보다 확고하게 정립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식 인권’은 1990년대 중반 사회주의권

6) 승재순·로영,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

7) 서보혁, 『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 144쪽. 그러나 북한 당국은 1990년대 이후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가 사회권을 물질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강조가 현격히 줄어들면서 식량부족을 반영하듯 기본권 중에서도 생존권을 강조하고 있다.

붕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자,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식 인권’이라는 용어는 1995년 6월 24일자 『로동신문』,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⁸⁾가 기반이 되고 있다. 이 기사를 통해 북한은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인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인권론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자주적인 인권론이며 올바른 가치관과 생명관에 기초한 과학적인 인권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⁹⁾

사회주의 인권 개념과 주체사상이 결합된 북한의 인권 개념은 결국 북한의 ‘수령제’ 정치체제를 정당화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체사상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수령의 올바른 지도와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령에 대한 절대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이 수령, 당과 ‘일심동체’를 이루어 수령과 당의 지도를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⁰⁾ 결국 인권은 수령에 대한 절대충성의 대가로 보장받게 되는 것으로 수령의 선물과 시혜로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8)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선집』, 제1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40~48 쪽 참조. 우리식 사회주의 아래 북한이 어떠한 인권 개념을 정립하고 대응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김수암,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인권관” 참조.

9) 송재순·로영,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10) 위의 글.

2) 인권에 대한 상대주의적 관점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과 이에 근거한 인권 압력에 대해 제국주의의 인권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이에 대응해 우리식 인권론에 근거한 인권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1994년 미국 『워싱턴 타임즈』 기자단과의 만남에서 “인민이 좋아하면 그것이 공정한 인권기준”이라고 언급한 것을 제시하면서 인권의 절대적 기준으로 ‘인민이 좋아하고 그들이 요구와 리익에 부합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¹¹⁾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인권기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권기준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식의 올바른 인권기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꼭 같이 맞는 유일한 ‘인권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 사상과 리념, 신앙과 제도상 차이가 있고 경제, 문화발전수준과 지향이 각이한 조건에서 나라마다 인권기준이 다르기 마련이다.”¹²⁾

북한 당국은 인권의 기준이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설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민족과 국가마다 역사, 풍습, 경제, 발전수준, 생활방식 등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각 조건에 맞는 방향으로 인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권 기준이 서로 다르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따라서 특정 국가와 집단의 ‘문

11) 위의 글.

12) 리현도,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옹호’ 타령은 침략과 간섭의 수단,” 『로동신문』, 2010년 3월 21일.

명'과 '기준'이 세계의 유일한 기준으로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서방국가들이 수용을 강요한 인권기준은 북한의 실정에 맞지 않는 '서방식' 인권기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¹³⁾ 즉,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인권의 대한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아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을 제국주의자들이 인권문제를 세계지배를 위한 외교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다른 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¹⁴⁾ 즉, 인권문제를 통해 해당 국가 내의 반혁명분자들을 부추겨 사회적 혼란과 불만을 조장 야기하고, 정권교체를 실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주권원칙의 강조: '인권은 곧 국권' 논리

이러한 북한 당국의 인권 개념은 또한 국가주권과 결합되어 국가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이란 없다는 입장과 연결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 이러한 주장은 더욱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미국 부시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배경으로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진영은 인권보다는 국가주권을 우선시 해왔다. 인권문제는 국가주권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간섭은 주권의 원칙,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주장해 왔다. 북한

13) 편집국 논설, “제국주의의 ‘인권’ 공세를 단호히 짓부시자,” 『로동신문』, 2007년 8월 17일.

14) 리현도,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옹호’ 타령은 침략과 간섭의 수단”.

도 이러한 논리로 대응하고 있으며 더욱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주장에 더 강하게 집착하고 있다.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이 “인권은 국경을 넘어서 보편적 가치이며 인권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라는 강도적인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인권은 곧 국권’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력사와 현실은 인민대중의 인권을 지키자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건걸히 수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라와 민족이 예측되면 인민대중도 노예의 처지를 면할 수 없고 국권을 잃으면 인민대중도 인권을 유린당하게 된다. 국가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이란 없다. 그런데도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옹호’의 간판을 들고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마구 유린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인권을 국경을 넘어서 보편적 가치’이며 ‘인권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다’라는 강도적인 논리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흑백을 전도한 논리이다. 인권은 하늘이 주는 행운도 아니고 더욱이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가 주는 선상품도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은 그 어떤 외세의 ‘압력’이나 ‘훈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개 나라가 자기 인민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물질적으로 담보 보장해줄 때 실현된다. 인권이자 국권이며 국권이자 자주권이다. 자주권을 상실한 인민은 그 어떤 인권에 대하여서도 말할 수 없다.”¹⁵⁾

15) 승재순·로영,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현재 북한 당국은 주권의 원칙, 내정불간섭 원칙에 따라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요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서방국가들이 인권문제 제기를 통해 내정에 간섭하여 북한의 체제 전복 또는 정권을 교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에 북한 당국은 모든 국가는 민족자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권문제는 국가의 자주권 문제로서 인권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자주권이 철저히 고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의 제도적, 법률적 보장이 있어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데, 자주권을 상실당하면 인권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인권은 곧 국권’이라는 북한의 논리이다.¹⁶⁾

이 같은 논리는 ‘선군정치’의 정당성 주장과 연결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적대세력의 인권개선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과 제도를 굳건하게 지키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당국에 의하면, 인권은 강력한 국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총대’가 든든해야 인민들이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군’은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로서 미국의 ‘인공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정치방식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군정치는 곧 인권옹호정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¹⁷⁾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인권관은 북한이 2009년 11월에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제출한 보고서에 잘 요약되어 있다.¹⁸⁾

16) 조택범, “제국주의의 반동적 ‘인권’ 공세를 짓부셔버려야 한다,” 『로동신문』, 2009년 10월 28일.

17) “반역사적인 지배주의외교정책－미국 인공공세,” 『로동신문』, 2007년 9월 13일.

18) 국가인권위원회, 『2009년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 인권보고서 및 관련 자료』(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9) 참조.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시된 인권에 대한 기본적 견해와 입장을 보면, “인권이란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 하면서, 북한 당국은 “인권이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부여되고, 완전히 존중된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권리”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이 가지는 모든 종류의 권리들과 구별되는 인권의 네 가지 고유한 특성(보편성과 평등성, 개별성, 존엄성, 불가분성)들에 기초하여 인권은 국가에 의해 인정되고 보장되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이고, 인간이 인간존엄성에 맞게 평등한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들의 인권관은 주체사상의 근본적 요구와 국가의 특수한 현실과 실제 경험들에 기초하여 확립되었으며, 이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에서 언급한 인권에 대한 견해에 기초하여 북한 정부는 “진정한 인권은 자주권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권리는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연과 사회의 모든 제약을 극복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하고, 자주적 요구와 이익에 맞게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인권은 사람이 자연, 사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주권이 될 때, 비로소 인간의 참다운 권리일 수 있다. 인권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체지향적 이념의 새로운 관점들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담겨 있다. 게다가 인권은 양도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타고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가의 보장 아래에서만 실현된다. 그것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인권을 “국가 및 사회와 무관한 자유”가 아닌 “국가 및 사회에 의해 보장된 자유”에 대한 권리로 승인하는 이유이다.¹⁹⁾

이와 함께 북한은 인권 및 국제인권문서들에 관해서는 유엔헌장의 원칙들을 존중하고, 다른 국가와 민족들의 정치, 경제제도와 발전단계, 독자성, 역사적, 문화적 전통의 다양성을 옹당히 고려하는 한편으로 인권의 보편성도 인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인권은 주권국가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인권 문제를 구실로 다른 주권국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정부를 전복시키고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 당국은 “인권이 곧 국가주권”을 뜻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에 대한 북한의 외교적 대응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미국, EU 등의 주도하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은 강화되어 왔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채택해 오고 있으며, 2004년부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유럽의회도 2006년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등 북한에 대한 인권압박의 수위를 높여 왔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북한 당국도 앞서 살펴 본 우리식 인권관에 입각하

19) 위의 글, 7~8쪽.

여 외교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에 대한 북한의 외교적 대응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체로 북한 대응의 이중적 성격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사안에 따라 강한 반발과 함께 상대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등 강경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선택적으로 국제인권 가치를 수용 혹은 국내법규를 개정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강경책과 유화책이 병행되는 북한의 대응과 관련해 대부분의 연구들은 북한체제의 속성, 외부위협, 현실적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²⁰⁾

그런데 이러한 양상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상대의 북한 체제나 최고 지도자의 인정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유엔 인권기구나 상대국이 북한의 체제를 문제 삼지 않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경우 대화 혹은 선택적인 협력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문제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리고 자국에 대한 적대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의 인권압력에는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에 대한 북한의 외교적 대응의 특성을 유엔과 EU, 그리고 미국의 인권개선 압력에 대한 북한의 외교적 대응 내용을 통해 간단히 살펴본다.

20) 이원웅은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에 대한 북한의 대응 방식을 거부(rejection), 역공(backlash), 선택적 협조(selective accommodation), 국내법 개정(legislation)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이원웅, “국제사회의 인권 압력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비판적 평가,” 223~229쪽. 이동윤과 백종은은 북한 정권이 인권문제를 기본적으로 국가주권 차원으로 인식하면서도 체제유지와 대외관계의 긴장완화, 경제문제 해결 등을 위해 강경책과 유화책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동윤·백종은,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외부 압력에 대한 내부 변화의 한계,” 『21세기정치학회보』, 제18집 1호(2008), 185~205쪽.

1) 유엔의 인권개선 압력에 대한 대응

북한 당국은 유엔의 인권활동과 관련해 현실적 필요에 따라 선별적 협력을 추구해 왔었다. 북한은 대남전략의 차원에서의 활용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남한보다 10년 앞선 1981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1990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2000년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여 현재 4개 국제인권협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들어 북한의 잇따른 식량난과 그로 인해 대량의 아사자 및 탈북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7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과 북한인민들의 곤경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때 북한은 결의안을 국제인권조약을 이용한 정치적 압력이라고 비난하고 B규약 탈퇴를 선언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북한은 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서 제출을 연기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 탈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어쨌든 유엔인권소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총회에서 지속적으로 채택되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북한은 자신의 체제를 압박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동기를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인권기구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인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유엔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유엔인권위원회가 서방국가들의 이해를 반영하여 ‘선택성’과

‘이중기준’으로 활동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2009년 11월에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의 장애물과 도전들 가운데 하나로 유엔의 ‘인권결의’ 채택을 포함한 반공화국 책동을 제기하고 있다.²¹⁾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은 인권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중요시하지만, 유엔의 철저하게 정치화되고 선별적인 결의들 때문에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인권 문제의 정치적 활용이라고 반박하고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지만, 일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에는 선별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2000년대 들어 북한 당국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의 지속적 채택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의 의무조항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지난해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도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체제에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엔인권기구의 관련자를 선별적으로 북한으로 초청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아동권리위원회 위원 2명과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을 초청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에 있어 정치적 성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별적으로 방북을 승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유엔과의 기술협력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협조를 하기도 한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공개한 “2001년 중간보고서(Mid-Year Progress Report

21) 국가인권위원회, 『2009년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 인권보고서 및 관련 자료』, 23쪽.

2001)”에 따르면 5월 북한 측 관리들이 스위스 제네바의 UNHCR 본부를 방문하여 유엔난민협약과 UNHCR의 활동에 대해 교육을 받았으며, 이탈리아 산레모에서 열린 난민법 세미나에도 참석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2005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북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유엔의 각종 협약과 난민 및 국적상실자 대처 방안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유엔 법률가 2명을 초청하였다고 한다.²²⁾

이러한 UN의 인권개선 압력에 대한 강한 거부와 반발 혹은 선택적 협조라는 외교적 대응은 UN의 활동이 자신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치적 행위인가 아닌가라는 판단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유럽연합의 인권개선 압력에 대한 대응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경제제건과 체제생존을 위한 ‘전방위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 수립 논의과정에서 인권문제를 하나의 의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북한은 EU와 1998년 12월 브뤼셀에서 정치대화를 열어 그 속에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양측 간 정치대화는 2004년까지 인권상황, 식량원조, 핵개발 문제, 한반도 안보상황,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문제,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등 상호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다루어나갔다. 그러던 중 양측은 2001년 6월 브뤼셀에서 인권대화를 가졌는데, 이때 논의된 내용은 상호평등 및 주권원칙,

22) 김수암, “국제사회의 인권제기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북한인권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INGO의 동향 분석』(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7), 347 ~ 349쪽.

인권원칙, 국제인권기구와 협력 등이었다.²³⁾

그러나 EU은 정치대화를 통한 양자 접근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했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열악할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이 대화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2003년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처음으로 상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 채택을 주도해 오고 있다. 이에 북한은 2004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정치대화를 끝으로 EU와의 공식 대화를 중단했다.²⁴⁾

북한의 EU에 대한 외교적 대응 행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견제 수단 가운데 하나로 EU와의 관계개선을 활용하려고 하였다. 유엔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EU가 주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현재의 세계질서를 세계화하도록 하는 미국과 다극화를 지향하는 EU와의 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은 EU와의 인권대화를 거부하면서도 정치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EU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3) 미국의 인권개선 압력에 대한 대응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가장 적대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미국이다.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북한 당국은 미국의 인권압력에 대해 북한에 미국식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하여 북한의 제도를 고립, 압살하

23) 서보혁, 『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 174쪽.

24) 구갑우·정택상, “유럽연합의 대북 인권 정책의 조건성,” 『북한인권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INGO의 동향 분석』(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7), 185~193쪽.

려는 정치적 의도로 규정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세계를 미국식 ‘자유세계’로 만들기 위하여 미국식 인권과 민주주의를 세계에 전파함으로써 미국식으로 세계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식 ‘문명’을 다른 국가에 수출하여 주체성과 민족성을 말살하고 미국의 문명이 인류문명을 지배하게 만듦으로써 미국식 문명의 세계화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가치관, 도덕관, 생활양식이 유일한 기준이므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전 세계를 미국식 ‘문명’으로 ‘일체화’하여 미국의 독점적 지배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²⁵⁾

이러한 인식 아래 미국이 북한을 1인 독재체제로 심각한 인권유린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국에 대한 ‘모략적이며 중대한 주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미국이 자신의 독점적 세계 지배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 아래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고 그것을 반미 자주적인 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 제도전복, 정권교체를 합리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자국은 비준했지만 미국이 아직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인권침해는 자국이 아니라 미국이 자행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²⁶⁾

25)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1997.6.19),” 『김정일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329~333쪽;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확산’ 책동은 파산을 면할 수 없다,” 『로동신문』, 2006년 8월 24일; 신분진, “미국식 ‘민주주의확산’ 책동의 반동적 본질,”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학)』, 52권 3호(2006), 59쪽; 김수암,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인권관,” 56~59쪽 참조.

26) 리학남, “제국주의자들의 ‘인권보호’ 타령을 반대 배격해야 한다,” 『로동신문』, 2009년 3월 22일; 김중손, “인권에 대한 모독,” 『로동신문』, 2005년 3월 11일

북한은 미국의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자신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대응 형태로 미국 내에서 종교와 인종차별, 총기류 범람, 폭력과 마약범죄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군의 이라크 포로학대 행위, 팔레스타인 문제 등을 사례로 들면서 미국이 패권국가, 경찰국가 행세를 하면서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무고한 주민을 희생시키는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²⁷⁾

북한은 2009년 11월에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의 장애물과 도전들 가운데 제일 먼저 미국의 적대적 정책을 제시하고 미국의 인권압력을 비판하고 있다.²⁸⁾ 보고서에서 “미국은 인권보호라는 구실 아래 북한 내정에 간섭하고 북한의 제도를 바꾸어보겠다는 공공연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미국 의회에서 제정한 ‘북한인권법’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경제적 제도를 자신들이 선택하는가는 그 나라의 인민들에게 달려 있다”면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고 북한을 전복시키고 자결권을 침해하려는 공공연한 시도라는 것이다.

참조.

- 27) 북한은 미국의 각종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미국의 인권 실태를 비판하고 있다. “인권유린의 원흉—미국,” 『로동신문』, 2009년 3월 13일; 림동춘, “력사의 징벌을 받아야 할 세계 최대의 인권유린자,” 『로동신문』, 2006년 4월 28일. 중동의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리현도, “미국의 ‘인권옹호’ 타령은 기만이다,” 『로동신문』, 2009년 1월 19일 참조. 이라크전과 관련해서는 로동신문의 인권과 관련된 기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28) 국가인권위원회, 『2009년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관련 자료』, 22쪽.

이상에서 살펴본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에 대한 북한의 외교적 대응 행태를 보면, 기존의 논의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강경과 유화, 또는 거부와 강한 반발, 선택적 협조 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차이는 인권에 대한 인식, 북한체제의 속성, 외부위협, 현실적 필요성 등에 의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상대의 북한 체제나 최고지도자의 인정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유엔 인권기구나 상대국이 북한의 체제를 문제 삼지 않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경우 대화 혹은 선택적인 협력을 수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이나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본격 추진하지 않은 시기까지 진행한 정치대화나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위원회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에 응한 것이 그런 사례들이다. 그러나 인권문제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리고 자국에 대한 적대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의 인권압력에는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압력에 대한 대응논리는 앞서 살펴본 ‘우리식 인권’론에 입각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경제재건과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체제안보에 직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을 정비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⁹⁾

어쨌든 북한의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에 대한 외교적 대응은 모

29) 북한은 2003년 장애인보호법을 새로 제정하였으며 2004년과 2005년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2009년의 헌법 개정에서 국가의 인권보호 조항을 삽입하였다. 물론 탈북자들의 증언들을 보면,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실제 현실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든 국가의 인권외교와 마찬가지로 당면한 외교정책 목표달성을 뒷받침하거나 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의 입장에서 인권개선 압력에 대한 외교적 활동 영역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지 않으으나 자국에 대한 적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치적 의도를 부각시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국가주권을 인정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상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선택적인 협력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4. ‘북한 인권문제’ vs 북한의 인권론: 비판적 평가

주체사상과 결합된 우리식 인권론에 입각한 북한의 논리 및 대응태를 보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와 북한의 대응논리 사이의 주된 쟁점을 보면 인권유린 혹은 개선의 판단기준, 그리고 인권과 국가주권과의 관계,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인권호보 활동에 대한 입장 등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쟁점은 인권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이론과 실천 두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쟁의 주요 내용들이다. 즉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문제, 인권과 국가주권과의 관계,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 등이다.³⁰⁾

30) 인권을 둘러싼 이론과 실천 두 영역에서 진행되는 논쟁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무철, “북한의 인권문제와 ‘인도적 개입’: 주요 쟁점과 비판적 평가,” 이수훈 엮음,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파주: 도서출판 한울, 2010), 164~200쪽 참조.

여기서는 이러한 쟁점의 내용을 살펴보고, 미국과의 인권 논쟁에서 중국이 제기하고 있는 대응 논리가 현재 북한이 제시하는 논리와 여러 가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의 인권에 대한 시각과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1) 인권의 보편성 vs 문화적 상대성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북한의 주요 인권 분야는 정치범 수용소, 구금시설에서의 고문이나 가혹행위, 강제로 송환된 탈북자 처리문제, 시민적·정치적 자유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주요 관심 분야를 보면 서구의 자유주의 관점에서 즉, 개인의 자유권을 중심으로 인권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대해 북한 당국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권기준은 없기 때문에 서구의 기준으로 자신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북한은 인권의 보편성을 둘러싼 입장에서 상대주의적 관점을 활용해 인권기준을 ‘서방식’과 ‘우리식’으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다.

사실 이론적, 실천적 맥락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적 가치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동아시아 일부 국가(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를 중심으로 문화상대주의 시각에서 개인을 주체로 하는 자유권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서구 중심 시각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보편주의자들은 문화적 차이나 해당 사회 발전 수준과는 무관하게 인권이 보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상대주의자들은 인권은 한 사회의 발전수준에 따라, 그리고 특정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에 따

라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권에 대해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은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는 서구 선진국들이 인권을 내세워 저개발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이들은 서구 국가들이 내세우는 인권이 서구의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문화의 특수한 산물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³¹⁾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입장(혹은 국가)이 다양한 국가 또는 집단의 문화적 특성과 그에 기인한 인권의 발달과정을 포용하지 않고 획일적 순응만을 요구할 경우,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역으로 상대주의적 입장(혹은 국가)은 문화적 특성을 내세워 실제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묵인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북한 인권문제도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상대주의적 관점은 인권의 보편성에 접근하는 시각을 4가지로 구분한 잭 도널리의 구분에 의하면 강한 상대주의(Strong relativism)로 분류할 수 있다.³²⁾ 강한 상대주의는 인권은 전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원칙적으로 문화와 다른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보편적’ 인권은 단지 문화적으로 특정한 가치들을

31)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은 자국의 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인권으로서 개인보다는 집단의 권리에 주목하고, 사회적, 경제적 발전권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보편주의 입장에서는 서구의 인권 개념은 문화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근대화의 필연적 산물로 간주하고, 상대주의적 주장은 권위주의 국가의 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고 비판한다. 김원식, “북한 인권 논의의 현황과 전망,” 『사회와 철학』 제9호(2005), 106~107쪽.

32) 잭 도널리는 인권의 보편성에 접근하는 시각을 급진적 상대주의(radical relativism), 급진적 보편주의(radical universalism), 강한 상대주의(strong relativism), 약한 상대주의(weak relativism)로 구분하고 있다. 잭 도널리, 『인권과 국제정치』, 박정원 옮김(서울: 오름, 2002), 73~75쪽.

점검해보는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보며, 가치들의 변화와 상대성에 강조점을 둔다. 북한도 문화, 역사적 차이 등으로 인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권기준은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인권 개념은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해 서양 근대사회로부터 전개되었지만, 그것이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인권의 내용이 풍부해진 것은 인간의 권리로부터 배제된 자들의 저항과 투쟁, 사회주의 운동과 혁명, 반제민족해방운동, 그리고 제3세계진영의 등장과 같은 역사적 전개과정을 거치면서 가능해졌다. 이러한 인권의 역사를 보면, 인권이 특정한 역사·사회적 과정 속에서 형성된 개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인권은 다른 모든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시대와 경험의 산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인권의 보편성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적 환경 속에서 획득되고 진화해온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³⁾

이러한 인권의 역사성을 고려한다면 인권의 보편성을 서구 자유주의적 사상에만 기초해 규정할 수 없으며, 이를 비서구사회로 단순히 확장하고 전파할 수 있는 개념도 아니다. 따라서 인권의 보편성 추구는 개방적이어야 하며 개인 및 집단과 국가,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지역과 문화 간의 상호 이해와 인정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확인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그런 ‘보편성’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처럼 인권 기준과 관련해 이분법적 사고를 통한 배제의 논리를 유지한다면, 국제사회도 북한의 문화적 상대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편적 인권의 기계적 적용이나 문화적 상대성의 지

33) 미셸린 이사이, 『세계인권사상사』, 조효제 옮김(서울: 길, 2005), 34~51쪽.

나친 강조는 실질적인 인권 논의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 할 수 있다.

2) 인권 vs 국가주권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에 대해 인권문제는 주권의 소관 사항이라는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이러한 주장은 내정불간섭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가 관할권 내에 있는 인민들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물질적 조건을 구비해줄 때 인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세력들이 인권의 보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인권보호’ 명분 아래 무력으로 약소 독립국가를 복속시키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인권압력은 자신의 체제붕괴, 정권교체 전략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은 국권이라는 관점에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논리를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대립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인권공세에 대해서는 체제안보의 관점에서 인권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적 국제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원칙 가운데 하나가 국가주권 및 내정불간섭의 원칙의 인정이다. 그런데 국가주권 개념도 인권 개념과 마찬가지로 서구 근대화의 산물로 근대국가의 등장 및 근대 국제체제의 형성과 관계를 맺고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국가주권 개념은 대내적 차원과 대외적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내정간섭을 금지하는 대외적 주권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전통적 형태의 제국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

를 매개로 확립되었다. 그 결과로 주권의 평등을 보장하는 국제법적 주권이 새로운 규범으로 등장한 것이다. 근대적 국제질서의 형성 이후 국제관계의 주요 관심 사안이 아니었던 인권 개념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관계의 화두가 되었다. 그렇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관계의 기본적인 규범, 규칙, 관행은 국가주권과 주권평등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내정불간섭은 주권에 상응하는 의무이다. 즉, 다른 국가들에게는 주권국가의 국내행위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의무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가가 자국의 영토 안에서 자국의 시민을 대우하는 방법을 규율하기 때문에 국제인권정책은 부당한 간섭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³⁴⁾

이에 냉전기간 동안 서구국가들은 자국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다른 지역의 인권을 거부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신생독립국가들의 증가로 인해 국가주권과 주권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 국가주권과 내정불간섭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 후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인권과 국가주권 간의 전통적인 사고의 변화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즉, 국제법적 측면에서 자결권과 국가주권 문제는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하게 되었다. 인종 청소 행위나 지속적인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개인이 희생되고,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유린행위가 특정 인종집단에 지속적으로 가해질 경우에 자결권 주장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주권의 원칙을 강력하게 고수하려는 입장과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실행하는 문제는 주권의 원칙을 넘어선다

34) 잭 도널리, 『인권과 국제정치』, 62~63쪽.

는 주장이 맞서면서 세계적으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국가주권과 내정불간섭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인권은 곧 국권”라는 논리는 비약적인 측면이 있다. 북한은 자주권을 상실한 국가 인민들의 인권은 유린당하기 때문에 국가의 자주권을 떠나 인권이란 없으면서 국권을 수호해야 인민의 인권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물질적 담보가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권은 어떻게 수호해 나가야 할 것인가. 결국 ‘우리식 인권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이 수령, 당과 ‘일심동체’를 이루고 수령과 당의 지도를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 따라서 인권은 국가의 자주권 수호를 위해 수령에 대한 절대충성을 해야 그 대가로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인권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자유권과 사회권은 국가권력과 관계에서 자유권은 국가권력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며, 사회권은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은 곧 국권” 논리는 체제안보적 관점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

3)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역할 vs 인권의 정치적 활용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간섭에 대해 북한 당국은 인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강경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압

박에 대한 대응 논리로도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인권기구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인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로 인해 유엔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특별절차에 따라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결의안 채택 제도의 이행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가 ‘정치화’ 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가 서방국가들의 이해를 반영하여 ‘선택성’과 ‘이중기준’으로 활동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이 상실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방국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나라들의 인권유린 현상, 미국 국내의 인권유린,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 대량학살, 전쟁포로 학대 등 미국의 인권유린 상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서방과 다른 사회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만 ‘결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³⁵⁾

탈냉전 이후 소말리아, 보스니아, 르완다, 동 티모르, 코소보 등의 일련의 인권문제에 대한 특정국가 및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³⁶⁾이 이루어져 왔다. 국가 주권 개념의 변화와 인권의 보편성 확대로 인권과 국가주권 관계의 재설정 필요성이 제기됨과

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05년 4월 20일.

36) 아담 로버츠(Adam Roberts)는 인도적 개입을 “어떤 국가에서 주민에게 대규모의 고통과 죽음이 초래되었을 때 그것을 막을 목적으로 그 국가의 동의 없이 군사력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모가미 도시키의 국경없는 의사회와의 활동처럼 시민에 의한 개입을 포괄하여 인도적 개입을 이해할 것을 주장한다. 모가미 도시키, 『인도적 개입: 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 조진구 옮김(서울: 소화, 2003), 21~51쪽. 사이먼 캐니는 인도적 개입에 미국가 조직을 비롯한 시민사회 차원의 개입뿐만 아니라 경제제재나 무력봉쇄와 같은 조치도 포함해서 인도적 간섭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이먼 캐니, “인도적 간섭과 국가주권,” 앤드류 볼즈 엮음, 『국제정치에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김한식·박균열 옮김(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4), 225쪽.

동시에 현실에서도 인권을 근거로 한 주권국가의 인권문제에 특정 국가나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 특히 군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개입하는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권침해 문제와 함께 또 다른 인권침해를 야기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인도적 개입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인종청소를 비롯한 대량학살 등의 위험으로부터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개입은 국제사회의 도덕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개입은 유엔 헌장과 국제관습법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에서 국가는 인도적 목적만을 위해 개입하지 않으며 국가 이익에 따라 개입과 불개입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국제법에는 인도적 개입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도덕적 측면에서도 어떤 원칙에 따라 개입의 권리가 정의되는지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며, 인도적 개입은 언제나 강대국의 문화적 편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³⁷⁾

역사와 현실 속에서 이념이 현실 권력정치의 수단이 되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국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한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주장이 실제로는 패권국의 논리 관철의 명분으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인권 이념의 원칙에서 볼 때도 경제제재나 무력 사용 같은 강압적 수단이 인권의 원칙에 부합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즉,

37) 인도적 개입에 대한 옹호와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John Baylis and Steve Smith, Patricia Owens(ed.),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524~528.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인권적 수단에 의존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원칙의 준수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의 방조나 묵인, 이로 인해 인권상황의 악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의 역할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이 국제관계에서 권력정치의 기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인권의 보호 및 실현을 위한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권보호와 관련해 유엔은 2005년 세계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보호의 책임(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을 유엔 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보호의 책임원칙은 우선 모든 국가들에게 자국의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국가가 그렇게 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또 국가가 시민들을 의도적으로 탄압한다면 불개입의 원칙보다 국제적인 보호의 책임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입의 책임 소재를 먼저 개입대상국과 유엔 안보리, 그리고 유엔 총회, 지역기구, 뜻이 맞는 국가들의 동맹, 그리고 각 개별 국가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호의 책임 원칙 채택은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국가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이 주권에 우선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³⁸⁾

북한의 인권상황이 소말리아, 보스니아, 르완다, 동 티모르, 코소보 등의 사례처럼 인도적 개입을 고려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인권 개선을 위한 관여(engagement)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유엔인권기구에서

38) 보호의 책임 원칙은 지난 3월 서방의 리비아 공습의 명분으로 최초로 적용되었다.

<표> ‘북한 인권문제’ vs 북한의 인권론

	국제사회	북한
인권의 기준	인권의 보편성	문화적 상대성
인권과 국가주권	주권보다 인권우선	인권보다 주권 우선
국제사회의 역할	인권 보호 역할	인권의 정치적 활용

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유엔의 공정성 비판이 일정 정도의 정당성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북한의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북한은 4개의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인권규범에 입각해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한 해명이 우선되어야 자신의 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4) 비판적 평가: 중국과의 비교

최근 중국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劉曉波)의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중국 인권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주장하는 인권론은 북한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중국은 인권문제를 자본주의적 담론으로 간주함으로써 인권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 사건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동시에 인권 압력을 행사해 오자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다. 우선 미국의 비난과 압력에 대응해 미국 내 범죄율 및 인종차별 등을 근거로 미국사회의

인권 탄압 실태를 비난함으로써 역공을 시도했다. 그리고 상대주의, 집체주의, 발전주의 3가지 논리체계로 이루어진 ‘중국 특색의 인권담론’을 통해 미국의 비롯한 서방국가의 인권압력에 대응해 나갔다.³⁹⁾

중국은 기본적으로 인권문제는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벗어나서 논의할 수 없다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인권문제는 국제적인 측면을 지니지만 주로 개별 국가의 주권범위 내의 문제라는 것이다. 즉, 인권은 본질적으로 국내 관할에 속하는 사안이며,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주권원칙에 종속되기 때문에 인권이 국가주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인식 아래 인권의 개념을 개인 차원과 집단 차원으로 구분함으로써 개인의 행복보다는 국가 전체의 복지 증진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강조한다. 개인권리와 구분되는 집단권리는 국가주권, 민족자결권, 발전권 등을 의미한다. 중국은 외국의 침략이나 점령을 당했을 때 그 국가의 독립과 주권이 유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국가 인민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중국은 집단 차원의 인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치적 독립 외에 경제적 발전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미국이 인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인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서방국가, 특히 미국이 세계 전략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권문제를 정치화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인권은 국경이 없다는 논리, 주권에 대한 인권우선론 등을 제기하면서 자국의 인권관과 의식구조를 다른 나

39) 전성홍, “중국의 인권담론과 정책: 해외 민주화 압력에 대한 대응,” 『신아세아』, 제15권 2호(2008), 82~86쪽.

라에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 패권경쟁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주요 구실로 인권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자신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국제관계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세계적으로 미국의 인권관념과 인권기준으로 양자관계와 국제문제를 처리하려는 세계화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의 인권실태를 기술하는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미국의 도덕적 정당성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⁴⁰⁾

한편, 중국은 ‘평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인권문제에 대해 양자 간 인권대화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 유럽연합과 양자 간 인권대화를 실시해 오고 있다. 중국은 단지 인권을 구실로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반대할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 문화의 발전 수준에 따라 인권관과 개선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관점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의 인식을 확대하면서 시각 차이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⁴¹⁾ 이러한 인식 아래 미국이 인권을 정치화하기 위해 유엔 인권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이 인권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선택성, 이중기준, 객관성 및 공정성 상실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40) 김수암, “문화상대주의, 주권원칙과 복한 인권,”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엮음, 『세계정치 5』(서울: 인간사랑, 2006), 169~170쪽.

41) 조경란, “‘중국’ 인권의 개념화에 대한 사상적 시론,” 성공회대 인권평화연구소 엮음, 『동아시아 인권의 새로운 탐색』(서울: 삼인, 2002), 118~121쪽.

중국은 인권에 대한 이러한 인식 아래 자신이 주도한 아시아지역 인권회의(1993년 3월)의 ‘방콕선언’에서 주권의 원칙을 강조하고 서방이 인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이 선언에서 국가주권, 영토의 통합성, 내정불간섭 존중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모근 국가는 자신의 정치체제를 결정할 권리, 자원을 통제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권리,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자결권이 국제법의 원칙이며 유엔에 의해 인정된 보편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인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 인권을 활용하는 인권의 정치화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 시스템의 민주화, 선택성 배제, 절차와 메커니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⁴²⁾

중국의 인권 담론과 북한의 ‘우리식 인권’을 비교했을 때, 양 국가의 인권관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인권보다 국가주권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에 의한 인권의 정치적 활용 주장에서는 중국보다는 북한이 강경하다. 즉,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인권압력을 체제붕괴 기도로 파악하면서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북한이 약소국으로 체제유지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인권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인 중국과 같이 유연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기에는 힘겨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⁴³⁾ 따라서 북한은 중국보다 더 강력하게 주권의 원

42) 김수암, “문화상대주의, 주권원칙과 북한 인권,” 171쪽.

43) 이는 상대국의 정책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경우, 북한과의 양자 인권대화를 추진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유엔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중국과는 양자대화를 추구하면서 유엔에서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선택성, 이중기준 등을 들어 유엔의 형태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모두 상대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이 ‘약한 상대주의’를 취하고 있다면 북한이 ‘강한 상대주의’적 입장이다. 약한 상대주의는 보편적 인권을 제1차적인 것으로 보고 문화에 따른 수정은 일정 정도 허용된다는 시각이다. 즉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역사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⁴⁴⁾ 이는 강대국인 중국이 대화를 통해 이해를 조율하고 자신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유연한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은 체제유지가 목표인 약소국이라는 점에서 중국보다는 경직된 인식과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서방식과 우리식 인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대화를 통한 이해의 조정보다는 배제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개혁개방을 통해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중국 체제의 속성상 주권의 원칙 강조와 함께 개인의 권리보다는 집단의 권리를 우선시하면서 발전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폐쇄적 체제의 속성으로 인해 북한의 경우 주권의 원칙 강조와 함께 전체 사회를 하나의 가족으로 설정하여 질서와 안정을 우선시하는 체제안보적 관점에서 인권에 접근하고 있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약소국인 북한은 인권보다는 국가주권을 강조

44) 잭 도널리, 『인권과 국제정치』, 74쪽.

하면서 ‘서방식’과 ‘우리식’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통한 배제의 논리를 더욱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국가 주권과 내정불간섭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식 인권론의 논리에 따르면, 결국 국권을 수호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수령과 당의 지도를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 다시 말해 수령에 대한 절대 충성의 대가로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인권과 국가권력과의 관계에서 자유권은 국가권력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며, 사회권은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은 곧 국권” 논리는 체제안보적 관점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 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유엔의 공정성 비판이 일정 정도의 정당성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북한의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북한은 4개의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인권규범에 입각해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한 해명이 우선되어야 자신의 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인권관과 이에 입각한 외교적 대응을 볼 때,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인권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움직임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 입장 사이의 조정 작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는 보편적 인권을 북한의 특수한 경우에 적용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북한 인권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북한이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 보편주의’에 입각해 인권 정의의 공통분모를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을 ‘역사적으로 보편화된 보편성’으로 이해하고 인권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특정한 권리의 우선성이나 우위성을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자유권을 강조하면서 사회권을 무시하는 태도나, 사회권의 실현을 명분으로 자유권의 신장을 유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 모두 지양해야 할 것이다. 즉, 비엔나 선언에서 채택된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 등 ‘인권의 4대원리’에 기반 해 인권의 보편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북한에 적용할 때는 북한체제 및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인권이 한 사회의 발전수준에 따라 그리고 특정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인권에 대한 문화적 상대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용과 존중, 그리고 비판적 대화의 원칙에 입각한 평화적이고 민주주의적 방식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인권은 곧 국권’이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과 국가주권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인민주권의 관점에서 국제관계에서의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원칙에 접근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에 대한 병행적 접근이 요구된다. 북한이 체

제안보의 관점, 다시 말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인권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최소한의 준수와 의무 이행에 대한 논의도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든 대화와 협력이 그러하듯이 인권대화의 전제는 바로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한 상호신뢰의 형성이라는 점이다.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실태와 북한의 인권관, 인권과 관련한 외교적 대응의 ‘다름’을 단순히 비판하기 보다는 ‘다름’의 대한 비판적 이해를 통해 ‘공통분모’를 만들어 나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 접수: 2월 25일 / 수정: 3월 24일 / 채택: 4월 1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선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선집』, 제1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1997.6.19),” 『김정일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중손, “인권에 대한 모독,” 『로동신문』, 2005년 3월 11일.
- 리학남, “제국주의자들의 ‘인권보호’ 타령을 반대 배격해야 한다,” 『로동신문』, 2009년 3월 22일.
- 리현도, “미국의 ‘인권옹호’ 타령은 기만이다,” 『로동신문』, 2009년 1월 19일.
- _____,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옹호’ 타령은 침략과 간섭의 수단,” 『로동신문』, 2010년 3월 21일.
- 림동춘, “력사의 징벌을 받아야 할 세계 최대의 인권유린자,” 『로동신문』, 2006년 4월 28일.
- 승제순, 로영,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
- 신분진, “미국식 ‘민주주의확산’ 책동의 반동적 본질,”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52권 3호(2006).
- 이동윤·백종은,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외부 압력에 대한 내부 변화의 한계,” 『21세기정치학회보』, 제18집 1호(200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05년 4월 20일.
- 조택범, “제국주의의 반동적 ‘인권’ 공세를 짓부셔버려야 한다,” 『로동신문』, 2009년 10월 28일.
- 편집국 논설, “제국주의의 ‘인권’ 공세를 단호히 짓부시자,” 『로동신문』, 2007년 8월 17일.
-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확산’ 책동은 파산을 면할 수 없다,” 『로동신문』, 2006년 8월 24일.
- “반역사적인 지배주의외교정책—미국 인공공세,” 『로동신문』, 2007년 9월 13일.

“인권유린의 원흉—미국,” 『로동신문』, 2009년 3월 13일.

『대중정치용어사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조선말대사전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2. 국내 자료

구갑우·정택상, “유럽연합의 대북 인권 정책의 조건성,”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INGO의 동향 분석』(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7).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INGO의 동향 분석』(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7).

_____, 『2009년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관련 자료』(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9).

김수암, “문화화대주의, 주권원칙과 북한 인권,”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엮음, 『세계정치 5』(서울: 인간사랑, 2006).

_____, “국제사회의 인권제기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INGO의 동향 분석』(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7).

_____,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서울: 통일연구원, 2007).

_____,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인권관,” 『북한법연구』, 제11호(2008).

김원식, “북한 인권 논의의 현황과 전망,” 『사회와 철학』, 제9호(2005).

모가미 도시키, 『인도적 개입: 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 조진구 옮김 (서울: 소화, 2003).

미셸린 이샤이, 『세계인권사상사』, 조효제 옮김(서울: 길, 2005).

사이먼 캐니, “인도적 간섭과 국가주권,” 앤드류 볼즈 엮음, 『국제정치에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김한식·박균열 옮김(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4).

서보혁, 『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7).

이무철, “북한의 인권문제와 ‘인도적 개입’: 주요 쟁점과 비판적 평가,” 이수훈 엮음,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파주: 도서출판 한울, 2010).

- 이수훈 엮음,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과주: 도서출판 한울, 2010).
- 이원웅, “국제사회의 인권 압력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비판적 평가,” 『국제정치논총』, 제47집 1호(2007).
- 앤드류 볼즈 엮음, 『국제정치에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김한식·박균열 옮김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4).
- 잭 도널리, 『인권과 국제정치』, 박정원 옮김(서울: 오름, 2002).
- 전성홍, “중국의 인권담론과 정책: 해외 민주화 압력에 대한 대응,” 『신아세아』, 제15권 2호(2008).
- 정태욱,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과주: 도서출판 한울, 2009).
- 조경란, “‘중국’ 인권의 개념화에 대한 사상적 시론,” 성공회대 인권평화연구소 엮음, 『동아시아 인권의 새로운 탐색』(서울: 삼인, 2002).

3. 국외 자료

- Baylis, John, Steve Smith, and Patricia Owens(ed.),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New York: Oxeord University press, 2008).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Viewpoint on Human Rights

Lee, Moo-Chul(The Institute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This study reviews the notion of ‘our way of human rights’ declar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characteristics of diplomatic responses based on the notion of North Korea. And this study analyses main points taken placed between the criticism of international society on human rights practices of North Korea and response of North Korea to it. Furthermore, this study criticises perspectives and policies of North Korea in comparing to those of China.

As a weak state, North Korea places more heavy weight on sovereignty than human rights, and draws a bold line between ‘western style’ and ‘our style.’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 Korea, which had been colonized, sovereignty and no 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are heavily emphasized. According to ‘our way of human rights,’ the guidance of party and the great leader‘ preserves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In respect to the north korean way of human rights and based on which diplomatic responses, it seems to be very unlikely to solve human rights problems in North Korea through dialogues and negotiations. Nevertheless, dialogues on human rights would be followed by mutual trust. So that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re able to be solved by active efforts to find out cooperative ground rather than criticism on perspectives of the North Korean way of understanding on human rights.

Keywords: human rights,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our way of human rights, sovereignty, humanitarian intervention, relativism